

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23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 김춘곤 의원 (찬성17명)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-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6월 1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춘곤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」 개정안이 2024.3.26. 공포된바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

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(1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3의2호)
- (2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#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<sup>1)</sup>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임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‘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’ 마련과 ‘교육 및 홍보’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## 2 개정안의 검토사항

- 본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함. 또한 부칙에서 시행일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음. 자세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.

<sup>1)</sup>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
(2024년 3월 26일)

◎ **법률 제20418호.**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

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**부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**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** 다만,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략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<u>&lt;신설&gt;</u>  4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</u> <u>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,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<sup>2)</sup>.

<sup>2)</sup>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5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  
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 1.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 
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 
 3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

- 더불어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<sup>3)</sup>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①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, ②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, ③다변화되는 일 방식·영역 대응, ④돌봄 지원체계 강화, ⑤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5개 영역과, 13개 중점과제, 10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‘지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’과 ‘교육 및 홍보’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이며 상위법과 법령의 체계화를 갖추고 있어 타당해 보임.
- 특히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<sup>4)</sup>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

4.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3) 참고: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(2020~2024)

4)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하고 있으며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하는 지원확대와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- 서울시 집행부서의 의견도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수용의 입장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원중,  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 석, 박철성, 유만희,  
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  
이상욱, 최민규 의원(17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개정안이 2024.3.26. 공포된바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3의2호)
- 나.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

#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 
재원조달 방안

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</u></p> <p><u>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에 시행계획 수립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여지가 있으나 확인결과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경제활동 촉진<sup>1)</sup>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및 교육·홍보<sup>2)</sup>를 기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### 1) 2024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(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)

- 사업목적
  -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
  - 경력단절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
- 사업내용 : <구직활동지원금 지원> / <일경험 지원> / <고용촉진지원금 지원>
- 소요예산 : 4,007,643천원(전액 시비)

### 2) 2024년 여성능력개발원 운영(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)

- 소요예산 : 5,173,308천원(전액 시비)  
⇒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(서울시여성가족재단→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→서울광역세일센터) 기시행